

농촌거주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정책적 시사점

강미나 주거복지전략센터장 · 김현진 연구원 · 이현지 연구원(국토연구원)

- 농촌거주 장애인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

- 높은 실업률과 낮은 소득 수준,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농촌거주 장애인의 약 50%가 노인장애인가구이며 독거 노인장애인도 높은 비율

➔ 노인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서 노인문제와 장애인 문제를 함께 고려한 주거대책이 요구됨

- 농촌지역에는 주거시설이 낙후한 노후주택이 많고, 생활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

- 농촌 장애인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높고 개선비용 부담능력이 낮아서 거주에 매우 불편
- 주거환경 측면에서 의료시설, 공공기관, 문화시설 등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있고, 사회복지 서비스도 거동이 불편한 농촌거주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움

- 농촌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정책을 추진

- 농촌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정책은 노인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
- 자가 노후주택의 경우 개량자금지원 및 대상자 확대
-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차가거주 장애인가구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저렴한 주거제공
-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한 주거관련 정보서비스 제공
- 농촌거주 장애인의 지역 내 주요 생활편의시설까지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

1. 농촌 장애인가구의 가구특성

● 장애인가구 중 약 30%가 농촌에 거주, 특히 노인장애인가구 비율이 높음

■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농촌거주 비율이 높고 농촌 장애인가구의 약 50%가 노인 장애인가구이며 독거 노인장애인도 9% 상회

• 농촌의 노인비율 증가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여짐

※ 일반가구 중 농촌거주가구비율(19.7%), 장애인가구 중 농촌거주가구 비율(26.6%)

구분	장애인 가구수(천 가구)	비율(%)
전국	2,112.4	100.0
농촌	562.8	26.6
도시	1,549.6	73.4

주: 도시지역(행정구역상 동부), 농촌지역(행정구역상 읍면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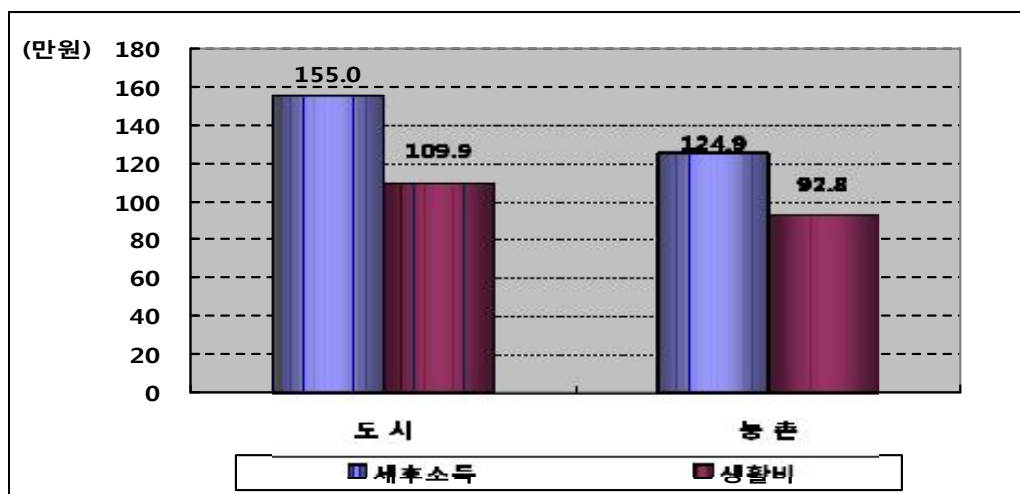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토해양부, 국토연구원, '2009년도 주거실태조사'

● 농촌 장애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장애로 인한 생활비 부담 과중

■ 농촌 장애인가구는 장애인가구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고, 의료비와 교통비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 부담이 큰 것(소득 중 생활비 부담비율이 74%)으로 나타남

• 농촌 장애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약 125만 원으로 일반가구의 소득(239만 원), 도시 장애인가구의 평균 소득(155만 원)보다 낮은 수준

[그림 1] 장애인가구 지역별 가계 수지



● 농촌 장애인가구의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미흡

- 농촌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주거지원 정책 및 제도가 부족한 실정
 - 농어촌 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보건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¹⁾에 한정
 - 주로 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380만 원(2010년 기준) 내에서 주택 내의 편의시설(욕실/화장실 안전바 설치, 주방시설 높이 조절, 문턱제거 등) 개조 등에 그침

2. 농촌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

● 높은 자가 단독거주 비율과 높은 주거비 부담

- 농촌 장애인가구는 자가비율이 높고 특히 단독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향
 - 이사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33.6%로 기 주택에서 동안 거주하는 경향이 높아서 평균 거주기간이 18.1년(도시 9.3년)에 달

【표 1】 장애인가구의 지역별 주택유형

(단위: %)

구분		단독주택	아파트	연립주택	다세대 주택	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	기타	계
도시	자가	33.3	48.0	12.9	4.6	0.9	0.2	100.0
	차가	39.3	43.1	7.7	5.5	2.5	1.9	100.0
농촌	자가	85.2	9.8	3.3	0.7	0.7	0.4	100.0
	차가	58.0	27.2	6.5	1.4	3.0	5.0	101.0

- 농촌 장애인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()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21.1%로 도시 장애인가구에 비해 낮으나 일반가구(16.0%, '08년)에 비해 높은 수준

1)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의 경우 국비 50%, 도비 25%, 시비 25%로 이 책정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실적차이가 생

[표 2]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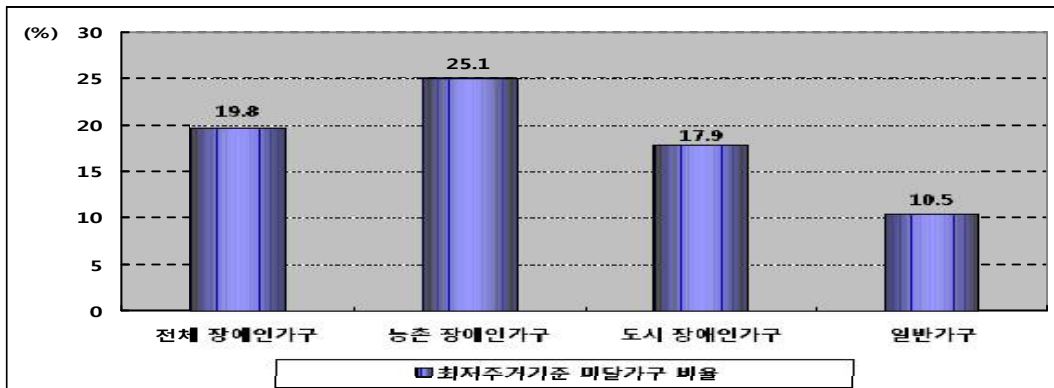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구분	장애인가구	일반가구
농촌	21.1	16.0
도시	30.0	18.7

● 높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비율과 낮은 개조부담능력

- 농촌 장애인가구 중 자가가구는 단독주택에 주로 거주하며 주택노후도가
 - 1980년대 이전에 건 된 노후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장애인가구가 37.9%로 나타남
- 농촌거주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은 25.1%로 일반가구는 도시 장애인가구보다 높은 상 임

[그림 2]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



- 장애로 인해 주택내부시설 개선이 요하나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 할 수 있다고 한 농촌 장애인가구는 14.4%에 불과하여 스스로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
 - 특히 농촌의 주택 장애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고, 주택내부시설 개선비용 부담 가능성이 4.2%에 불과

● 주택개조 및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제고 필요

- 농촌 장애인가구에서 가장 요한 주거지원 로그 으로 주거비 보조(46.0%), 주택개조 비용 보조(15.3%)에 대한 요구가 높음

- 농촌 장애인가구의 경우 특히 주택개조 비용 보조와 간단한 수에 대한 요구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의 지로 대책마련이 가능
- 주택내부 구조측면에서는 특히 단열, 방수, 주요 구조부, 장애인 생활에 편한 내부구조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아서 주택내부구조에 대한 개보수가 요

【표 3】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

(단위: %)

구분	농촌	도시	계
주택구 자금 저 자	7.8	17.5	100.0
주거비 보조	46.0	35.8	100.0
주택개조 비용 보조	15.3	5.2	100.0
공공임대주택 주 우선 부여	2.9	6.9	100.0
자 생활을 위한 가서비스	3.2	4.0	100.0
간단한 수	9.0	6.7	100.0
기타	16.0	23.9	100.0

- 농촌 지역은 전 역 및 스포츠장 등 대중교통시설을 제외한 생활편의시설까지 이동 시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고, 이는 장애인가구에게 더 큰 불편요인
- 주거환경 측면에서 편의시설, 의료시설, 공공기관, 문화시설, 복지시설, 대중교통, 교 환경 등에 대한 접근성에 대하여 가장 만족도가 떨어짐

3. 정책방안

- 적은 자금 부담으로도 주거상태 개선 가능
-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제고를 통해 주거생활환경 개선 가능

● 농촌 자가거주 장애인가구는 노후 단독주택의 개조, 차가가구는 저렴주택 제공으로 주거안정 도모

- 농촌 자가 장애인가구는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, 안전을 위한 주택개조정보, 정책지원 정보, 시행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 등의 역할 제공, 한 개조비용 지원
-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과 연계하여 정보 및 상담 제공

-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의 경우 자가, 기 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이 에도 대상 확대 추진

- 임차가구의 경우 주인의 동의를 지 하는 경우 주택개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아 기 수급가구 이하의 장애인가구의 경우 정책적 택이 전
- 장애인 주거를 제공하는 임대인에게 인 를 제공하는 등 차가가구 주택의 주택개조를 원활하도 하고, 전세임대주택 및 매 임대주택 등을 확대하여 저렴주택 제공

●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개선

- 노인장애인가구 및 독거 노인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높고, 농촌의 노인 비율이 으로도 차 높아 전 에 노인 문제와 장애인의 문제를 고려한 주거대책 마련
- 중 정부와 지자체가 업 답을 통해 농촌지역에 적 한 장애인 주거정책 시행
 - 지자체 차원에서 주택 개량 진을 위한 ‘주택개량기구’를 용하고,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보조금 지원을 의 화시 는 방안을 토
 - , 인력부족, 담당공 원의 은 교체, 주거복지정책 담당부서의 성 등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문제 을 개선

● 농촌 장애인의 지역 내 주요 생활편의시설까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

- 이동서비스제공, 장애인 복지관 활용 등을 통하여 공공업 대행, 은행업 등을 할 수 있도 하여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화
- 장애인 주거관련 정보를 구 하고 보건복지부의 행복 음 정보 을 공유하여 장애인가구의 소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

● 국토연구원 주택토지·건설경제연구본부 강미나 주거복지전략센터장 (mnkang@krihs.re.kr, 031-380-0349)

● 국토연구원 주택토지·건설경제연구본부 김현진 연구원 (hyjkim@krihs.re.kr, 031-380-0232)

● 국토연구원 주택토지·건설경제연구본부 이현지 연구원 (hjlee@krihs.re.kr, 031-380-0639)